

『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8월 16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

1. 제안이유

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관광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에게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함 (안 제4조)
- 나. 「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」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
- 다. 관광약자를 위하여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6조)

라.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5일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4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— mpfive705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: ○성 명: ○연락처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가.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1부.

나.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
다.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관광약자”란 장애인, 노인, 임산부, 저소득층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1.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
3.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

4.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「관광진흥법」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.

제6조(관광환경 조성사업)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
2.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 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
3.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
4.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
5.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·지원 사업
6.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
7.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
8.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7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(포상) 시장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」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

②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관광진흥법 제47조의3(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4.5.28.] 제47조의4(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·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4.5.28.]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,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,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,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,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위한 강사료, 여비, 교재 및 홍보 리플렛 제작, 원고료, 회의비 등의 비용 추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4. 작성자

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장 백 완 근